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7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혜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성준, 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현기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 이민석, 이병윤, 이상욱, 이성배, 이숙자, 이승복, 이은림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6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의 경우 일부 홍보대사들은 뚜렷한 홍보 성과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(안 제3조 제4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촉) ① ~ ③ (생 략)	제3조(위촉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<u>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</u> <u>를 실시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</u> <u>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</u> <u>영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¹⁾의 소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 문의²⁾하였으나 현재로선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사항] 구체적인 홍보대사 연임 결정 기준,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 수립요구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 관련부서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에서 개선사항을 검토

2) 문의결과 실적 및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내부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⇒ 예외적으로 소규모 용역을 통한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